

# 조건불리지역직불금

## 신청자격
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 (주민등록지)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(농업법인 포함)

\* 제외대상 : 1.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(2015년)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
2. 농지 및 초지 면적이 각각 1천㎡미만인 자

## 대상농지

-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\*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(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'03년부터 '05년까지 농업에 이용·관리된 것에 한함)

\* 농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

## 지급단가

- 농지 50만원/ha
- 초지 25만원/ha

## 지급상한면적

- 농업인 : 밭(과수원포함) 4ha, 논·초지 각각 30ha
- 농업법인 : 밭(과수원포함) 10ha, 논·초지 각각 50ha

## 등록신청서 제출

- 1) 2015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
- 2) 1)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\*
  - \* ①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② 임차·사용차한 농지의 경우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
  - ③ 논농업·밭농업·조리불리농지(초지)에 이용된 농지확인서

\* 자세한 내용은 직불금 콜센터(1644-8778) 또는 2016년도 직불사업시행지침서 참조



#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2016년 직불금

**신청기간: 2016. 2. 1. ~ 4. 29.** (논·묘작 직불금 2. 1. ~ 3. 15.)

**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**

## 쌀소득보전직불금

## 밭농업직불금

## 조건불리지역직불금

